

문서번호	도로시설처-702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1.22.
공개여부	공개

★과장	팀장	도로시설처장	도로교통본부장	
협 조	팀장			
	팀장			

『201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』

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

2016. 1.

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

2016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, 재해 및 재난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공용성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1 추진개요

1. 관련근거

-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
(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)
- 법정외 시설물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종합계획 수립시행
(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)
※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하 「시특법」으로 표기

2. 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제출 (시특법 시행규칙 제3조,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제출)

-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주무부처 의장(서울특별시장)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FMS 입력시 제출한 것으로 본다
- 계획 및 실적은 시행 즉시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(www.kistec.or.kr)의 “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실적제출” 란에 접속하여 전산입력(FMS) 하여야 한다.
※ FMS(Facility Management System) :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

2 일반사항

1.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시특법 시행령 제5조 제②항 규정
 -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·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
 -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
 - 시설물의 설계·시공·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
 -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·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
 -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

2. 대상시설물 현황 (1·2종, 법정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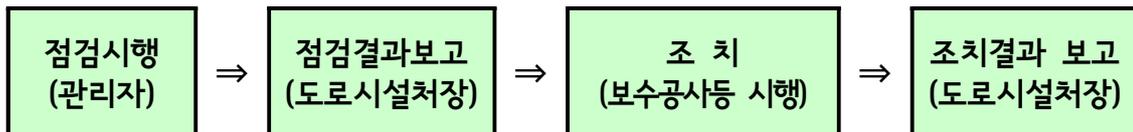
(단위 : 개소)

시설물별		계	한강 교량	일반 교량	고가 차도	입체 교차	터널	지하 차도	복개 구조	언더 패스
계		138	1	57	21	23	3	26	1	6
법정	소계	70	1	31	12	12	3	10	1	-
	1종	23	1	8	9	1	3	1	-	-
	2종	47	-	23	3	11	-	9	1	-
법정외		68	-	26	9	11	-	16	-	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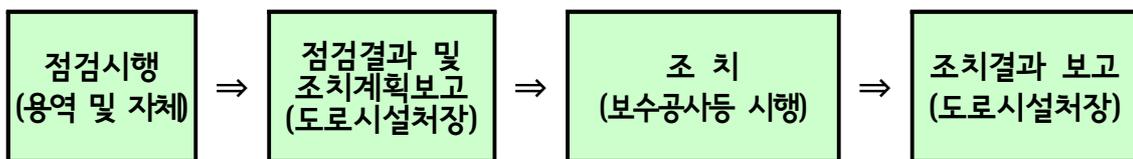
3 세부시행 계획

1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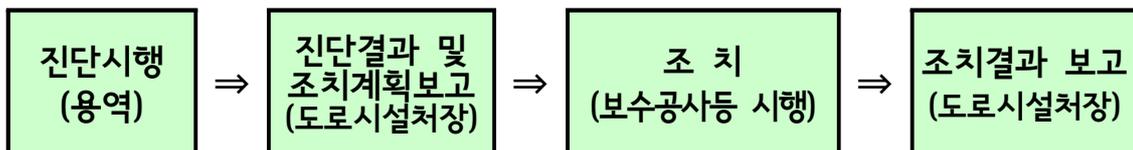
- 정기점검 (반기에 1회이상)



- 정밀점검 (등급별 차등 적용) - 다음페이지 참조



- 정밀안전진단(종별, 등급별 차등 적용) - 다음페이지 참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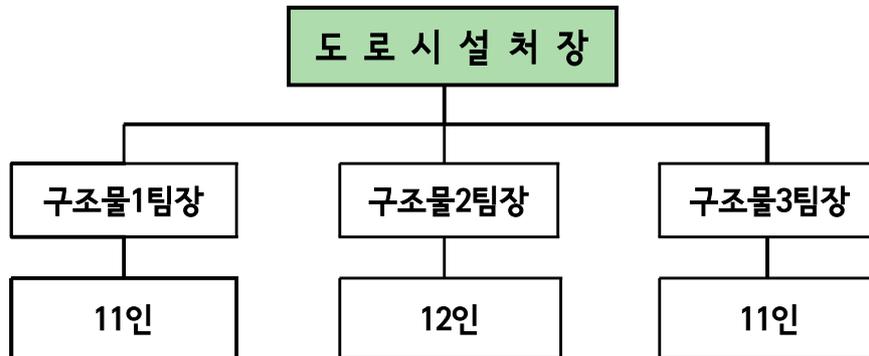
2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및 방식

구 분	법 정 주 기	계 획 주 기	시행방식
정기점검	A,B,C등급 : 1회이상/반기 D,E등급 : 3회이상/년	A,B,C등급 : 1회이상/반기 D,E등급 : 3회이상/년	담당자 점검
정밀점검	A등급 : 1회이상/3년 B,C등급 : 1회이상/2년 D,E등급 : 1회이상/1년	A등급 : 1회이상/3년 B,C등급 : 1회이상/2년 D,E등급 : 1회이상/1년	용역 또는 외부전문가
정밀안전 진 단	A등급 : 1회이상/6년 B,C등급 : 1회이상/5년 D,E등급 : 1회이상/4년	A등급 : 1회이상/6년 B,C등급 : 1회이상/5년 D,E등급 : 1회이상/4년	용역

○ 점검결과 시설물 구조적 손상 발생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수 있음

3. 시설물별 조직·인원 확보에 관한 사항

○ 조직도



○ 점검인원 확보 현황

구 분	구조물 1팀	구조물 2팀	구조물 3팀	계
점검인원	12	13	12	37

○ 점검장비 확보 현황

계	디지털 카메라	쌍안경	비파괴 측정장비	각종 측정장비	확대경	고배율 카메라	그라인더	균열폭 측정현미경
42	12	6	3	15	1	1	1	3

4. 2016년 정밀점검 및 진단 용역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

○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

(단위: 천원)

합 계			정밀안전진단		안 전 점 검			
					정밀점검		자체정밀점검	
총계	시설물	금 액	개소	금 액	개소	금 액	개소	금 액
		98개	3,182,865	1	576,100	92	2,560,765	5
1팀	8	699,183	-	-	8	699,183	-	-
2팀	41	1,577,462	1	576,100	36	961,362	4	40,000
3팀	49	906,220	-	-	48	900,220	1	6,000

○ 점검 및 진단 (자체)용역 대상 현황

(단위: 개소)

종 별		계	한강교량	일반교량	고가차도	입체교차	자하차도	터 널	언더패스	복개구조	옹 벽
총계		98 (5)	1	42 (5)	13	14	16	1	2	1	8
1종	안전진단	1	1								
	정밀점검	9		2	5	1		1			
2종	정밀점검 (자체)	37		16	1	8	7			1	4
법정 외	정밀점검 (자체)	51 (5)		24 (5)	7	5	9		2		4

○ 관련 규정

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(안전점검의 실시) 및 7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, 제8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)
- 시설물 정밀점검 등 기술용역 자체시행 강화(기술심사담당관-13672, '14.8.26)
 - ▶ 법정 시설물 점검주기 : 시특별의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
 - ▶ 법정외 시설물 점검주기 : 자체 정밀점검, 외주 정밀점검 순으로 실시

5. 2016년 보수·보강 계획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

○ 보수보강 단위공사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종별	시설물명	금액	구조물팀	
	총계	25개소	11,145		
	계	5개소	2,840		
1	1종	홍지문터널 보수공사	800	1팀	
2	1종	정릉터널 환기소 외 2개동 옥상방수공사	340		
3	1종	북부고가교 보수공사	500		
4	1종	정릉천고가 보수공사	600		
5	2종	안양천교(독산2교) 보수공사	600		
	계	9개소	5,305		
6	1종	경인1지하차도 보수공사	900	2팀	
7	2종	경인2지하차도 보수공사	495		
8	2종	내곡IC 보수공사	450		
9	1종	노량교 보수공사	500		
10	법정의외	양재천교 보수공사	700		
11	2종	청담1교 보수공사	500		
12	1종	청담대교 보수공사	500		
13	1종	탄천1고가교 보수공사	260		
14	1종	탄천2고가교 보수공사	1,000		
	계	11개소	3,000		
15	1종	두모교 내진성능개선 추가공사	1,200	3팀	
16	1종	서호교	600		
17	2종	동빙고다리			서호교 외 2개시설 보수
18	법정의외	서빙고다리	300		
19	2종	중랑상단C교			
20	2종	중랑하단C교			
21	법정의외	중랑동측언더패스			
22	법정의외	중랑서측언더패스			
23	법정의외	상계지하차도	900		
24	법정의외	마들지하차도			마들지하차도의 2개소 보수 및 포장
25	법정의외	수락지하차도			

○ 일상유지보수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공사명	금액	담당자
1	2016년 자동차전용도로 강남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	1,726	2팀
2	2016년 자동차전용도로 강북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	1,736	3팀

6.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사항

○ 긴급상황

- 시특법시행령 제12조(중대한 결함)에 의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
- 화재 및 재난, 긴급사고 발생 시

○ 긴급조치 체계도



7.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

시공도서, 감리도서, 유지관리도서 보관 ; 도로시설처 서고(홍지문터널 관리소 내)

8.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 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

각 시설물별 보수계획 중 세부계획은 전년도에 시행되었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, 자체정밀점검결과 등에 의거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보수 계획을 수립시행.

- 안전점검 실시결과 긴급사항 및 공사비 소액 : 일상유지보수공사 등을 통해 조치
- 그 외 긴급을 요하지 않고, 보수에 많은 예산 필요시 : 익년도 예산 편성 조치